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- 9호

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14일
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○ 영동군 인구의 41.4%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현실에 대응하여, 단순 노인복지를 넘어 군정 전반의 고령친화적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함.

○ 이에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3 시행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 ‘고령친화도시’ 지정 공모 및 국·도비 사업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보행·주거·돌봄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·장애인·임산부 등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포용적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, 군수책무 (안 제1조 ~ 제3조)

○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시행계획, 실태조사, 조성사업(안 제4조 ~ 제7조)

○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등 (안 제8조 ~ 제10조)

○ 교육 및 홍보, 재정지원, 포상 (안 제11조 ~ 제13조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8월 19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　　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**영동군의회**
- 전　　화 : 043)740-3088,　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・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・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조례 제 호

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3에 따라 영동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고령친화도시”란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,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영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 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) ① 군수는 체계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,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세부 추진계획
3. 분야별 추진방법 및 재원 조달계획

4.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5.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 및 지정 후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군수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건강증진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

2. 노인의 역량 강화 및 교육·평생학습에 관한 사업

3.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·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업

4. 노인의 주거·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

5. 노인의 돌봄·안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업

6. 세대 간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업

7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
4.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5. 노인의 정책 참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
2. 노인복지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관계자
3. 보건·복지·주거·교통·도시계획·평생교육·문화 등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노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거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영동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
5.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 등)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재정지원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·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영동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 **관련법령**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의3(고령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또는 시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· 절차 · 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」

제20조(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계획) ① 정부는 저출산 · 고령사회 중 ·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~ ⑤ 생 략

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 ·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